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. 1. 13 선고 2021가단481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]

---

## 전 문

원 고 A(개명 전 이름: B)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1. 13.

## 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. 7. 28. 접수 제5768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## 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 2. 적용법조

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 오윤경

별지